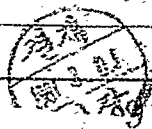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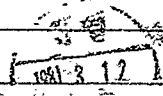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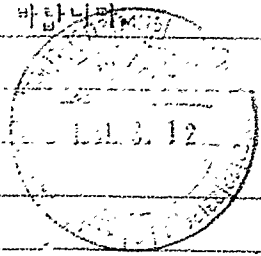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공43-	27선의번호 75-7627	선경비청	소 임 선 결 사 장
처리기간		시 장		
작성일자	87. 3			
보존일자				
보 조 기 관	제2부 시장	작성 3.6		
	도시계획국	작성 3.6	87. 3. 6	
	도시행정과	작성 3.6	87. 3. 6	
기안책임자	정철환 양주혁	87. 3 (전병일)	법무담당관	
경 유 수 신 장 조	각안 참조	발 신	날 세	검 열 87. 3. 12
사 유	서울특별시 제비거 관리 및 처분 규정 개정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예규 제392호로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제비거 관리 및 처분 규정중 일부를 법집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역				
1) 제비거 매각대금 연계 이자율 (년 35% → 년 27%)				
인하 (은행대출에 준함)				정서
2) 일반 공매의 최저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중 연좌에 의한 주의 매각 제도를 폐지 → 계속 공매				
참분 개정안 요지, 개정 이유, 개정 대비표				관인
(제2안) 443-202				
수신	문화공보실장			발송
제목	서울특별시 제비거 관리 및 처분 규정중 개정 규정 제정 의뢰			
1. 서울특별시 제비거 관리 및 처분 규정을 개정 하시기 의뢰 하				

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경안 7부. 끝.



# ○ 改正要旨

1. 替費地賣却代金延滯利率引下

(35% → 27%)

~~2. 同以上流札財產隨意賣却制度廢止~~

## 改正理由

### 1. 利率引下

1. 市中銀行金利引下

○ 貸出：年 25% → 20%

○ 延滯：年 30% → 27% (銀行金利連動制)

2. 一般市有財產：年 35% → 27% 引下

市営 APT 分讓金：年 19.5% (定期預金利率)

3. 不動産景氣沈滯是因茲歲入確保

4. 实际需要者賣却誘導

~~2. 同以上公賣流札財產隨意賣却廢止~~

~~1. 土地常習投機行為根絶~~

~~2. 假需要者投機抑制~~

~~3. 土地賣却叫叫異物議除去~~

서울특별시 예규 제 5호



서울특별시 替賣地管理 및 處分規程中 改正

서울특별시 替賣地管理 및 處分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第2項 第1号中 「納付日까지 年35%」  
를 「納付日까지 年27%」로 한다

第14條 第3項 第1号 및 第2号中 「年3割5分」  
을 「年2割7分」으로 한다

附 則

(1) 이 規程은 1981. 3. 16. 부터 施行한다

(2) 이 規程 施行以前에 이미 契約完了 또는  
賣却한 替賣地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程에  
依한다



서울특별시 제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중 개정

서울특별시 제비지 관리및 처분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호중 "납부일 까지 년 35%" 를 "납부일 까지  
년 27%" 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및 제2호중 "년 3합 5푼" 을 "년 2합 7푼"  
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1. 3. 16. 부터 시행 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완료 또는 매각한

제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p>항 목</p>	<p>항 목 (인)</p>
<p>제73조 제2항 제1호 매과 대금 일시불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용 기간내 에 대금을 전부 지불할 때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1개월까지 35%의 인체 이자를 가산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시에는 할양 조지 할수 있다.</p>	<p>제73조 제2항 제1호 매과 대금 일시불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용 기간내 에 대금을 전부 지불할 때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1개월까지 35%의 인체 이자를 가산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시에는 할양 조지 할수 있다.</p>
<p>제74조 제3항 제1호 매과 대금 전부를 납부한 후 잔액의 3% 이상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고 잔액 전부를 납부 기간내에 35%의 이자를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 시에는 잔액 전부를 납부한 후 잔액의 3% 이상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74조 제3항 제1호 매과 대금 전부를 납부한 후 잔액의 3% 이상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고 잔액 전부를 납부 기간내에 35%의 이자를 납부 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 시에는 잔액 전부를 납부한 후 잔액의 3% 이상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74조 제3항 제2호 제1호중 대금 연체가 있을 때에는 년 3할 5분의 연체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p>	<p>제74조 제3항 제2호 제1호중 대금 연체가 있을 때에는 년 3할 5분의 연체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p>

<별지 제 7 호 서식 >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제비지매각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지 구 명	총필지수	면 적	최저·최고면적	매 각 재 산 위 치

2. 입찰종류 및 입찰일시

3. 입찰 및 등록장소: 당시 도시계획국 입찰실

4. 입찰 방 법: 일반공개 경쟁입찰

5.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  
 결일 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금  
 철회하여야 합니다.

6.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  
 부의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 <sup>추정금</sup> 20%의

금리를 가산하여 하여야 한다.

다. 연장기간 6개월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해  
제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7. 낙찰자의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세 및 국세납세권증을  
계출하고 관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미달: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10 미만인 때

나. 기재착오: 구획번호나 예정면적등 주요기재사항이 불적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9. 폐기처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출 용자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명도에 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아니하므로 현장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1. 판매도면 및 재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  
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도시행정과(75-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 8 호서식>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채 비 지 매 각 공 고

### 1. 매각재산의 표시

지구명	종필지수	면적	최저·최고면적	매각재산위치

### 2. 입찰종류 및 등록일시

3. 입찰 및 등록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 입찰실

4. 입찰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5. 시장용지 입찰가격

시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제 또는 낙찰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액의 3할이상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 당일 11:50 까지 입찰자의 이름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함)

7. 시장 시설보증금 납부

시장용지 낙찰자는 낙찰액의 3할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시설보증금으로 관급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보증금 납부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 2회의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 6개월내에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

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의 유의사항  
9. 낙찰자의 유의사항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시세 및 국제납세필증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다음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보증금미달 :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1/10 미만일 때

나. 기재 착오 : 주택번호나 면적면적 등 주요기재사항이 틀렸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다.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11. 채비지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전입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상, 지장물의 철거 및 이권보상 정도에 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아니하므로 현상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3. 관제도면 및 재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것은 도시행정과(75-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8

서울특별시

<별지 제 16 호 서식>

수입인지

매 매 계 약 서

구	남	계	과
인			

대장 58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지구 구의

채비지예정면적 평 흡

2. 매도대금: 총액 —금 원정액

3. 계약보증금: —금 원정액

4. 대금납부일자: 서기 197 년 월 일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청  
하고 매수인을 통하여 청하여 갑·을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종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서명 날인후 각각 1종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서기 197 년 월 일

매도인(갑): 서울특별시

취재표 서장

②

매수인(을): 서울특별시 구 동 면지

성 명

## 계 약 약 정 조 항

제 1 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 조 본계약 재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이 없이 아래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계약 재산의 전매양도
2. 본계약 재산의 처분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3. 본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3 조 을이 전 제 2 조를 위반하였거나 위 매도대금을 매금 납부 일자에 납부치 못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해약되지 아니 하였을 때는 매도대금 총액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본계약의~~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납부기간의 연장은 계약일로 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본계약 약정 전 2, 3 조를 을이 위반하여 해약되었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의 소유물로 한다.

제 5 조 각각토지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서 강타한 지 확정 직분매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감하여 생하여도 을은 항종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6 조 갑은 본계약 재산에 부수된 철거 및 명도에 관한 것과

토지상속어, 다른 근접업구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물이 채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물의 신청에 의해 이행된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물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매각 토지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증정된 토지대금은 검산서의 서가로 하고 감정된 토지대금은 계약당가에 년 5분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각각 정산한다.

제 8 조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감·을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에게 결정권이 있다.